貿易學會誌 제43권 제5호
2018년 10월 pp.1~23
https://doi.org/10.22659/KTRA.2018.43.5.1

논문투고일 2018. 09. 14
심사완료일 2018. 10. 03
게재확정일 2018. 10. 13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비교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for Forfaiting of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김 창 선** Chang-Sun Kim

목 차

Ⅰ. 서 론
Ⅱ. 포페이팅 관련 수출금융위험 고찰
Ⅲ.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Ⅳ. 위험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수출기업들의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해소시켜주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포페이팅통일규칙이 2013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어 수출기업들의 관심증대와 외국환은행들의 포페이팅관련 상품개발이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포페이팅 취급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계은행 간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실태를 각 은행의 약정서를 통해 비교해보고 국제상업회의소의 표준 포페이팅계약서와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 외국환은행은 담보위험과 유보사유인 소구가능 사유가 은행간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발견하였고 수출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위험관리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제어〉 : 포페이팅, 상환청구불능조건, 포페이팅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포페이팅계약서

* 본 연구는 2018학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Seokyeong University in 2018.
** 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교수

Ⅰ. 서 론

국내 상장기업에 대해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이 2011년부터 적용하게 되어, 국내 상장기업 중 특히 수출기업들은 수출채권의 금융기관 매각이 단순 차입금으로 계상되기 때문에[1], 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의 부채감축 방법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이 수출채권의 매도자인 수출기업에게 상환청구불능조건(without recourse)[2]으로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기법으로 포페이팅(forfaiting)이 있다. 전 세계 포페이팅 시장규모는 2012년도 약 3천억 달러 이상[3]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도 약 300억불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수출기업들에 대하여 대부분 기한부 신용장을 중심으로 발행은행의 인수통보 접수 이후 상환청구불능조건의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외국계은행에서는 신용보강 대체방법으로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을 연계하여 D/A 및 O/A거래에까지 취급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밝힌 바 있다.(김창선, 2017)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 한국외환은행[4]이 포페이팅업무를 처음 도입하여 포페이팅약정서를 제정 운용해오고 있다. 한편 수출기업들의 포페이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포페이팅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Forfaiting ; 이하 'URF800'이라 한다)[5]도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페이팅 금융을 제공하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규칙이 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규칙의 내용을 포페이팅 관련 약정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포페이팅관련 수출금융 위험의 관리방법도 은행별로 차이가 있고, 국내 외국계 은행과도 차이점이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출기업들의 포페이팅 관심과 수요가 점증하는 시점에서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포페이팅 관련 약정내용을 재점검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상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로써 국제규칙이 시행된 지 수년이 경과된 시점에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위험관리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증

1) K-IFRS 적용이전에는 수출기업이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게 소구조건으로 매각하는 행위 즉 네고(negotiation)를 할 경우에는 '우발채무'로 회계처리하여 왔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적용 이후 '부채'로 계상되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2) '상환청구불능조건' 외에도 '비소구조건', '상환불능조건', '무소구조건', '비상환조건' 등 은행의 거래약정서마다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포페이팅 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에 있는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3) Jean Guy Carrier, Forewords of URF800

4) 한국외환은행은 하나은행에 흡수합병되어 2015년 8월 현재의 KEB하나은행이 되었다.

5) 포페이팅통일규칙(URF800)은 2012. 11월 멕시코 ICC 은행위원회에서 96퍼센트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총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 1월부터 발효되었다.

하는 수출기업의 포페이팅 수요에 기본 체제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과거 연구로는 포페이팅 제도, 이론적 접근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최근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취급행태를 분석한 연구가 보인다. 박세훈·정영동·김중년(2009)과 오원석·한기문(2011)은는 포페이팅 제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이며, 김정애·최종서(2014)는 매출채권 양도관련 회계처리를 연구하였으며, 이운창(2013), 오원석·이운창·김필준(2013)과 유현진(2014)은 포페이팅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며, 김창선(2017)은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취급행태를 실증 분석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수출기업과 체결하는 포페이팅약정서를 수집하여 포페이팅 위험관리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국내 외국계 은행과 비교검토하였으며, URF800의 표준 포페이팅약정서와도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전국은행연합회의 17개 정사원은행과, 준사원은행인 40개 외국계 은행 중에서 포페이팅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4개 은행[6]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Ⅱ. 포페이팅 관련 수출금융위험 고찰

1. 포페이팅통일규칙상의 계약관련 내용

2013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된 포페이팅통일규칙(이하 'URF800'이라 한다)은 국제포페이팅협회(IFA)가 제정한 'IFA 가이드라인'과 '1차 포페이팅시장 입문서'[7]에 근거하여, 국제상업회의소와 공동작업으로 제정하여 1차 시장과 2차 시장[8] 모두를 위한 표준화된 거래약관이 되었다.[9]

이하에서는 URF800에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6)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참조(2018.6.20. 방문)

7) 2004년에 2차 시장에 대한 규칙인 'IFA'가이드라인'과 2008년도에는 '1차 포페이팅 시장 입문서'를 출간하였다. ; URF800 Introduction 참조.

8) 1차 시장은 최초의 지급청구권을 보유한 원매도인인 수출기업과 매수자 포페이터인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며, 1차 포페이터와 2차 포페이터(매수자) 사이의 매매거래를 2차 시장이라 한다.

9) URF800 Forewords.

1) URF800의 적용

URF800 제1조에서는 URF800은 포페이팅거래에 적용되는 규칙이며,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준수문구를 규정하고 있다.[10)]

2) 상환청구불능조건

URF800 제4조에서는 포페이팅 거래일에 지급청구권의 매도인인 수출기업은 매수인인 금융기관에게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지급청구권을 매각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이나 그 이전의 매도인에 대하여 지급청구권상의 금액이 만기일에 지급거절되었다고 상환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1)]

3) 1차 시장에서의 포페이팅계약

URF800 제5조에서는 1차 시장에서 포페이팅 거래 시에는 원매도인과 1차포페이터 사이에 지급청구권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12)]

① 포페이팅 거래금액, 통화 만기일과 원채무자를 포함하여 매입청구 및 신용보강서류 내용
② 포페이팅 계약일에 당사자들이 알고있는 요구서류 목록
③ 이용가능기일[13)]
④ 매입대금
⑤ 결제일 또는 결제예정일
⑥ 준거법 및 재판관할규정

10) URF800 Article 1.
11) URF800 Article 4.
12) URF800 Article 5.
1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적합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 최종일을 의미하며, 포페이팅계약서에 '즉시'로 기재 시에는 거래일 익일로부터 10영업일을 의미한다.; URF800 제2조 참조.

4) 당사자의 책임

URF800 제13조에는 1차 시장의 포페이팅계약이나 2차시장의 포페이팅확인에서의 당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포페이팅거래에서 당해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할 권한을 갖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의무의 부담과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와 그 의무가 적법 또는 유효하지 않거나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4)]

또한 원매도인인 수출기업은 1차 포페이터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책임이 있다

① 원매도인이 결제일에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의 존재 또는 기초거래에 관하여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나 사정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이를 거래일 전에 1차 포페이터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② 원매도인이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상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거나 제3의 권리주장이나 권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경우

③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가 결제일이나 그 전에 1차 포페이터에게 취소불능하고 무조건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

④ 결제일 전후 원매도인이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 또는 기초거래에 따른 의무로서 그에게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⑤ 결제일 전후 지급청구권이나 신용보강서류상의 의무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거래에 관하여 사기가 있었던 경우

2. 포페이팅관련 수출금융위험 유형

포페이팅은 수출채권을 매도하는 수출기업에게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구조의 개선효과가 있는 점 외에, 수입국의 국가위험을 줄일 수 있고, 수입자 또는 신용장개설은행의 미상환 위험 즉, 신용위험 등을 회피하여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박세운 · 허해관 · 채동헌, 2013, 6)

포페이팅계약[15)]의 본질은 수출채권의 양도계약(contract of assignment)이나 수입상과 수출상의 원인거래로부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오원석 · 한기문, 2011,

14) URF800 Article 13.

15)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수출기업과 체결하는 포페이팅계약을 포페이팅약정서로 운용하고 있다.

99)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의해 수출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수출기업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수출채권을 양수받은 은행은 양수인과 신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포페이팅 관련 위험을 금융기관이 떠안는 것이고 포페이팅약정서에 의해 위험인수의 범위가 정해지고 있다.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포페이터인 은행의 입장에서 포페이팅은 기존의 수출환어음 매입(네고)에 비해 원채무자로부터 수출대금이 미회수되는 경우 사후관리의 대상이 기본적으로는 수출채권의 매도자인 수출기업으로부터 해외에 있는 원채무자(신용장발행은행 또는 수입기업)로 전환된다는 특징이 있다.(박세운 외, 2013, 5)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험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위험 즉,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담보하고,[16] 포페이팅과 같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취급하는 수출팩토링은 수입상의 신용위험만을 인수하지만, 포페이팅을 취급하는 포페이터인 은행은 신용위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위험을 부담한다.

1) 국가위험(sovereign or country risk)(Ian Guild·Rhodri Haris, 1985, 71; 이운창, 2013, 79; 박세운 외, 2013, 5)

원채무자인 수입기업의 소재 국가가 대외채무를 동결하거나 대외결제에 대한 규제를 하는 등 국가의 특별조치 내지 전쟁, 혁명, 민란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 의한 손실가능성, 수입자 또는 보증은행 소재국의 외환통제 등의 국가위험을 말하며(이재민·배인성, 2015, 104), 포페이팅은 국가간 여신행위이므로 국내 대출과는 달리 포페이터가 국별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2) 신용위험(guarantor credit risk)(Ian Guild et al, 1985, 70; 박세운 외 2013, 5)

수입상 또는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는 위험을 말하며, 개설은행 및 개설은행 소재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 파산, 지불유예 조치 등으로 수출대금이 미입금되는 경우의 위험을 말한다.

16)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선적후)약관 제4조,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제6조,

3) 수출입당사자위험(exporter and importer risk)(Ian Guild et al, 1985, 73)

사기 등 수출입당사자간의 분쟁에 따른 지급정지명령 등 수입국 법원의 법적 조치에 따른 미결제 위험을 말한다. 포페이터인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대부분 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수출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4) 서류위험(documentary risk)[17]

매수자인 포페이터가 신용장발행은행에게 제시한 서류의 하자에 의해 지급거절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며, 신용장발행은행의 인수통지서를 접수하게 되면 포페이터의 서류위험은 없어지게 된다. 국내 대부분의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포페이팅은 신용장발행은행의 인수통지서 접수 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취급하므로 은행은 이러한 서류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류심사에 자신이 있는 경우라면 신용장발행은행의 인수통보 전에 수출기업과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

5) 통화위험(currency risk)(Ian Guild et al, 1985, 73)

포페이터가 자국통화가 아닌 외국통화로 포페이팅을 취급하므로 통화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포페이터는 통화위험을 회피하면서 지급청구권의 재할인이 가능하도록 포페이팅의 거래통화를 제한한다.(오원석·이운창·김필준, 2013, 260)

6) 이자율변동위험(interest risk)(Ian Guild et al, 1985, 69)

포페이터인 은행이 포페이팅 대상 어음을 매입할 때 고정금리로 적용하는 반면, 어음매입자금은 변동금리로 조달할 경우 금리리스크가 발생한다.(이재민 외, 2015, 108) 또한 포페이팅은 주로 고정금리로만 취급되기 때문에 변동금리 표시 연지급 환어음을 포페이팅하는 경우에는 포페이터가 금리변동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된다.(오원석 외, 2013, 261)

17) Ian Guild·Rhodri Haris(1985), ibid, p.72. 2014년 10월 수출기업 모뉴엘은 자회사 인수, 사옥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직면하자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무역금융 총6,672억원과 무역보험 보증액 3,282억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되어, 국내은행들의 수출채권 매입 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등 수출금융 취급행태를 개선하게 되었다.

7) 추심위험(collection risk)(Ian Guild et al, 1985, 74)

상환청구불능조건 매입 후 수입자가 포페이터인 수출지 은행에 수출대금을 송금해야 하지만 수출기업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그 시점에 수출기업이 부도의 상황을 맞아 계좌 출금정지 등의 은행거래 정지상태에 처한 경우 입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를 송금위험(remittance risk)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3. URF800 표준계약서상의 수출금융위험

URF800 부속서에는 1차 시장용의 기본계약서와 개별계약서가 있고, 2차 시장용의 포페이팅 표준계약서가 제시되어 있다. URF800이 적용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에 앞서 개별거래에서 요구되는 사항들과 그 계약의 준거법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18)]

URF800 기본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매수인(은행)은 URF800 제13조 제a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책임을 부담하되, 다만 [포페이팅거래와 관련하여 포페이팅계약에서 합의되는 예외, 추가사항, 변경사항]이 적용된다고 제시되어 있고,[19)] 개별계약서 제5조 제2항에도 매수인은 URF800 제13조 제a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책임을 [변경사항을 추가하여] 부담한다고[20)] 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포페이팅 거래에서 수출기업과 매수자인 외국환은행 간에 예외,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 URF800 Annexes. The model agreeents set in the following annexes are designed to assist users in drafting contracts incorporating the URF and are provided for their convenience without any assumption of liability. They should not be used without first carefully considering the requirements of the particular transaction being contemplated and the governing law of the document.

19) URF800 Annex 1. The Master Forfaiting Agreement 6-2
The buyer shall have the liabilities imposed on it by article 13 a. of the URF with [such exceptions additions or modifications as may, in relation to a forfaiting transaction, be agreed in a forfaiting agreement].

20) URF800 Annex 2. Forfaiting Agreement 5-2
The buyer shall have the liabilities imposed on it by article 13 a. of the URF [with the following changes: set out changes to article 13 URF].

Ⅲ.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1. URF800 규정내용의 약정서 반영

수출기업과 국내 외국환은행이 포페이팅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근거가 되는 계약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외국환거래약정서'가 적용됨을 승인한 상태에서 포페이팅 계약을 위해서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포페이팅거래)'[21]의 형태로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2013년 1월부터 포페이팅통일규칙이 발효되었고, 포페이팅거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인 '외국환거래 추가약정서(포페이팅거래)'에 URF800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어야 함에도[22] 그 규칙의 내용을 포페이팅약정서에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에 한국외환은행이 처음 포페이팅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 이래, 당시에 제정한 포페이팅약정서를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포페이팅통일규칙의 주요내용을 이 약정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페이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체제 마련에는 이러한 약정서의 재정비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준용규정(또는 준거법 및 관할권)에 대해서도 국내 대부분의 외국환은행들은 신용장통일규칙(UCP), 신용장대금 상환에 관한 통일규칙(URR), 전자무역관련 약관을 준용규정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포페이팅 계약과 관련된 기본약정인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외국환거래약정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여기에다 국제표준은행관행(ISBP)과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를 추가하고 있다.

국내 외국계 은행들의 포페이팅약정서를 살펴보면, 국내 외국환은행들과는 달리 신용장통일규칙 등의 국제규칙이나 전자무역관련 약관들을 준용규정에 추가하지 않고, 포페이팅약정서의 상위 약정서인 외국환거래약정서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준용규정으로 삼고 있다.

---

21) 외국환거래약정서는 종래의 수출거래약정서, 수입거래약정서와 내국신용장거래약정서를 1997년 통합 제정하여 사용해오고 있으며, 수출 수입 내국신용장거래 등과 관련하여 은행의 권리행사, 무역업체의 담보제공의무, 적용환율, 수출자의 은행수수료, 비용과 손해의 부담 등 중요한 규정을 정하면서 주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와 은행의 면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2) URF800 Article 1.

〈표 1〉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준용규정 반영

은행별		URF	UCP	URR	ISBP	URC	전자무역약관	여신거래약관	외국환거래약정	한국법률
시중(6)	신한[23]		○	○		○	○	○	○	
	우리[24]		○	○				○	○	
	SC제일[25]		○		○			○	○	
	KEB하나[26]		○	○		○	○	○	○	
	국민[27]		○	○			○	○	○	
	한국씨티[28]		○	○	○	○	○	○	○	○
특수(5)	산업[29]		○	○		○	○	○		
	농협[30]		○	○			○	○	○	
	기업[31]		○	○				○	○	
	수출입[32]		○	○			○	○		
	수협[33]		○	○			○	○	○	
지방(6)	대구[34]		○	○			○	○	○	
	부산		비	취	급					
	광주		비	취	급					
	제주		비	취	급					
	전북		비	취	급					
	경남[35]		○	○			○	○	○	
외국(4)	SMBC[36]							○	○	○
	Mizuho[37]							○	○	○
	HSBC[38]							○	○	○
	중국건설[39]							○	○	○

자료 : 각 은행의 포페이팅약정서에서 발췌 정리

외국계은행들을 포함하여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수출기업과 체결하는 외국환거래약정서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23) 신한은행의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신한포페이팅거래)' 제10조.
24) 우리은행의 'FR Forfaiting(신용장방식)약정서' 제9조.
25) SC제일은행의 '수출환어음매입 기본약정서(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 제7조.
26) KEB하나은행의 '수출거래약정서(포페이팅거래용)' 제7조.
27) 국민은행의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포페이팅거래용) 제7조.
28) 한국씨티은행의 '수출환어음매입 기본계약' 제5.09조.
29) 한국산업은행의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서' 제13조.
30) 농협은행의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포페이팅거래용)' 제10조.
31) 기업은행의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카운터포페이팅거래용)' 제9조.
32) 한국수출입은행의 '외국환거래약정서(포페이팅거래)' 제14조.
33) 수협은행의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수출입은행 제휴 포페이팅거래)' 제11조.
34) 대구은행의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포페이팅거래용)' 제7조.
35) 경남은행의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포페이팅거래)' 제7조.
36) SMBC의 'Master Forfaiting Agreement' 제8조 및 제9조.
37) Mizuho의 'Master Forfaiting Agreement' 제8조 및 제9조.
38) HSBC의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서' 제14조 및 제15조.
39) 중국건설은행의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서' 제6조 및 제7조.

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준용규정[40]이 있기 때문에 포페이팅약정서에 동일한 준용규정을 반복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국내 외국계은행의 준용규정 표현이 타당하다고 본다.

2. 포페이팅 담보위험

포페이팅이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금전채권인 지급청구권을 상환청구불능조건(without recourse)[41]으로 매매하는 거래[42]를 말하며, 수출자로부터 은행이 매입하는 1차 시장(primary market)과 1차 포페이터가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2차 시장(secondary market)의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상환청구불능조건이란 수입업체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수출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업체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해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취급하는 포페이팅 대상 거래는 주로 기한부 신용장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제외하고 D/A거래에 대해서는 취급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창선 2017, 33쪽)

〈표 2〉 은행별 포페이팅약정서상 담보위험 범위

은행별		국가 위험	수입상 신용 위험	은행 신용 위험	당사자 위험	서류위험	통화 위험	금리 위험	추심 위험
시중(6)	신한[43]	○	○	○					○
	우리[44]		○	○					
	SC제일[45]	○	○	○					○
	KEB하나[46]		○	○					
	국민[47]		○	○					
	한국씨티[48]	○	○	○					
특수	산업[49]	○		○					
	농협[50]	○	○	○					○

40) 국내 각 은행의 '외국환거래약정서' 제7조 외.

41) 상환청구권(recourse)에는 권리의 유무에 따라, full-recourse or with recourse(상환청구가능), non-recourse or without recourse(상환청구불능)과 limited-recourse(제한적 상환청구가능)의 세 종류가 있다.(김창선, 2017, 28).

42) 포페이팅통일규칙(URF800) 제2조(용어 정의).

(5)	기업[51]			ㅇ					
	수출입[52]		ㅇ	ㅇ					
	수협[53]	ㅇ		ㅇ					
지방 (6)	대구[54]		ㅇ	ㅇ					
	부산	비	취	급					
	광주	비	취	급					
	제주	비	취	급					
	전북	비	취	급					
	경남[55]		ㅇ	ㅇ					
외국 (4)	SMBC[56]		ㅇ	ㅇ					
	Mizuho[57]		ㅇ	ㅇ					
	HSBC[58]	ㅇ	ㅇ	ㅇ				ㅇ	ㅇ
	중국건설[59]		ㅇ	ㅇ					

위 표에서 보면, 포페이팅을 취급하는 국내 대부분의 외국환은행들은 포페이팅 거래약정서에서 수입상 또는 은행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과 수협은행과 외국계 HSBC은행은 국가위험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심위험(또는 송금위험)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과 HSBC은행만이 약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위험, 서류위험, 통화위험과 금리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은행이 인수위험에 포함하지 않고, 후술하는 소구의무 대상에 일부 포함시키고 있다.

위와 같이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포페이팅 취급 시 인수하는 위험이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URF800의 기본약정서에서도 개별적인 조건을 인정하고 있기에 동일

43) 신한은행 전게 약정서 제2조.
44) 우리은행 전게 약정서 제6조.
45) SC제일은행 전게 약정서 제3조.
46) KEB하나은행 전게 약정서 제3조.
47) 국민은행 전게 약정서 제3조.
48) 한국씨티은행 전게 계약서.
49) 한국산업은행 전게 약정서 제3조.
50) 농협은행 전게 약정서 제2조.
51) 기업은행 전게 약정서 전게 약정서 제6조.
52) 한국수출입은행 전게 약정서 제9조.
53) 수협은행 전게 약정서 제5조.
54) 대구은행 전게 약정서 제3조.
55) 경남은행 전게 약정서 제3조.
56) SMBC 전게 약정서 제3조.
57) Mizuho 전게 약정서 제3조.
58) HSBC 전게 약정서 제6조.
59) 중국건설은행 전게 약정서 제3.1조.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외국환은행과 수출기업 간에 체결되는 포페이팅 약정서의 내용이 은행마다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혼란이 뒤따르므로 약정서의 내용은 업무의 편의상 어느 정도 통일시킬 필요성은 제기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은행에서는 신용장발행은행의 지급확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credit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형된 형태의 포페이팅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신용장발행은행(또는 수입상)의 인수여부와 무관하게 포페이팅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이후의 채권만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수통보 접수 전까지는 상환청구가능조건부 매입(negotiation)으로 취급하거나 추심(collection)으로 처리하였다가, 인수통보가 오면 상환청구불능조건의 포페이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창선, 2017, 29)

신용장발행은행의 '인수'라 함은 신용장발행의 우발채무에서, 이제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확정채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채권 미회수의 위험은 거의 없다. 즉,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은행의 리스크가 거의 없는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출기업의 차입금 감소와 금융자산의 제거(book-off) 기능의 의미만 있다고 할 것이다.

3. 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소구의무 대상

수출기업과 포페이터인 은행간에 수출채권을 포페이팅하는 단계로 보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상환청구가능조건(with recourse), 상환청구불능조건(without recourse) 혹은 제한적 상환청구가능조건(limited recourse)[60]의 세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김창선, 2017, 28) 또한, 상환청구불능조건 포페이팅을 취급하는 국내 거의 모든 외국환은행에서는 수출기업과 체결하는 포페이팅 약정 시에 허위 진술, 허위 서류, 인수거절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출기업에게 상환청구가능의무를 부담시켜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약정하고 있는 데 이를 '제한적 상환청구가능조건'이라 할 수 있다.[61]

URF800상의 유보사유(points of reserve)[62]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유보부로 지급청구

60) SMBC Account Receivables Purchase Agreement 제3조에는 Limited Recourse(제한적 소구)로 표기하고 있고, HSBC 'Master Agreement for Export Receivable Finance' 제3조에는 Repurchase(환매)로 되어 있다.

61) 신한은행,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포페이팅거래) 제6조(소구의무가 있는 경우), KEB하나은행,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포페이팅거래) 제3조(상환의무) 등 대부분의 은행의 추가약정서에 제한적 상환청구가능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62) URF800 제2조(정의) Points of Reserve means, where payment has been made under reserve, those obligations of the seller that the parties have agreed must be satisfied for payment to be-

권을 매도한 매도인이 이행해야할 의무를 말하며, 대부분의 국내 은행의 포페이팅관련 약정서에는 소구의무가 있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은행들이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되는데, 아래 여러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은행이 소구권을 갖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소구권을 갖는 위반사유가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조건을 약정서에 규정하고 있다.

URF800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필요서류(required document)'에서는 포페이팅계약과 포페이팅확인서에 관한 필요서류를 의미하는데, 지급청구권을 증빙하는 서류 및 수입기업인 원채무자가 지급청구권을 보충하기 위하거나 그에 수반하는 목적으로 발행한 서류이거나, 수입기업과 수출기업의 서명의 진정성과 구속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의미한다.(박세운 · 허해관 · 채동헌, 2013, 43) 포페이팅계약서에 매도인인 수출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 매도인이 진정성과 구속력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진술 및 보장'조항을 추가하여 이에 갈음하고 있으며,[63] 이를 위반 시에는 수출기업에게 소구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

〈표 3〉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소구의무 사유[64]

은행별		허위 진술	보장 위반	인수 거절	법원지 급정지	계약 불이행	비지정 은행	허위 서류	포페이팅 비대상	기한 이익 상실	약정서 미이행
시중 (6)	신한[65]	o	o	o		o	o	o	o		
	우리[66]	o	o	o		o			o	o	o
	SC제일[67]			o	o	o	o	o			o
	하나[68]	o	o		o	o		o			
	국민[69]	o	o		o	o		o			
	한국씨티[70]	o			o			o			

come final.

63) 국내 모든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약정서에는 '진술 및 보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64) 대부분의 외국환은행들은 수출기업에게 포페이팅약정서에 아래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① 본인이 제출한 신용장은 유효하고 모든 조건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② 본인이 제출한 수출환어음 및 모든 선적서류는 진정하고 완전하며, 신용장의 조건에 엄격히 일치합니다.
③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행한 수출환어음의 인수는 진정하고 유효합니다.
④ 본인은 수출환어음 및 신용장상의 권리를 양도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 권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합니다.
⑤ 본인은 당해 신요장을 근거로 어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자금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⑥ 본인은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은행의 사전동의 없이는 당해 신용장의 어떠한 조건변경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수(5)	산업[71]	○	○		○	○		○			
	농협[72]	○	○	○		○	○	○	○		
	기업[73]	○	○	○	○	○		○		○	
	수출입[74]	○	○	○		○					
	수협[75]	○	○	○	○	○		○	○		
지방(6)	대구	○	○	○	○	○		○			
	부산	비	취	급							
	광주	비	취	급							
	제주	비	취	급							
	전북	비	취	급							
	경남[76]	○	○		○	○		○			
외국(4)	SMBC[77]	○	○	○		○		○			
	Mizuho[78]	○	○	○		○					
	HSBC[79]	○	○			○					
	중국건설[80]	○	○			○					

자료 : 각 은행의 포페이팅약정서에서 발췌 정리

또한 URF800에서는 매수인인 은행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지급청구권을 매입할 때 유보사유(points of reserve)를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박세운·허해관·채동헌, 2013, 45) 매수인이 부여한 유보조건을 매도인인 수출기업이 지키지 못한다면 은행은 매도인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급청구권 매도자인 수출기업이 중복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거나 포페이터와 사전 동의없이 원채무자

65) 신한은행 전게 약정서 제6조.
66) 우리은행 전게 약정서 제7조.
67) SC제일은행 전게 약정서 제4조.
68) KEB하나은행 전게 약정서 제3조.
69) 국민은행 전게 약정서 제4조.
70) 한국씨티은행 전게 계약서 제3.02조.
71) 한국산업은행 전게 계약서 제3조 제6항.
72) 농협은행 전게 약정서 제6조.
73) 기업은행 전게 약정서 제6조.
74) 수출입은행 전게 약정서 제10조.
75) 수협은행 전게 약정서 제6조.
76) 경남은행 전게 약정서 제4조.
77) SMBC 전게 약정서 제3.3조.
78) Mizuho 전게 약정서 제4조.
79) HSBC 전게 약정서 제7조.
80) 중국건설은행 전게 약정서 제3.3조.

인 수입기업과 결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매도자인 수출기업에게 예외적으로 환매청구를 할 수 있도록 포페이팅계약서에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제한적 소구조건(limited recourse)이라 한다.[81] 이러한 유보조건은 국내 각 외국환은행에서는 포페이팅약정서상에 소구의무조건이라 하여 위 표와 같이 은행 간에 다소 차이가 있게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주로 기한부신용장을 대상으로 포페이팅을 취급하는 데 대해 외국계은행의 경우에는 기한부신용장 외에 일람불신용장, D/A와 O/A까지 취급범위와 취급대상이 넓다.(김창선, 2017,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인수측면에서는 국내 외국환은행보다 소구의무 사유가 적은 점을 감안하면, 위험인수 능력이 높으면서 더 적극적인 취급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국수출입은행의 카운터포페이팅 위험인수

국내 외국환은행이 1차 매입한 포페이팅 채권을 재매입해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카운터포페이팅 업무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및 경남은행 등 9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다.(김창선, 2017, 33)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는 개설은행의 신용위험을 수출입은행에 전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위험 인수능력과 국내 외국환은행의 영업네트워크 간 협업의 형태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5.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포페이팅보험 위험인수

국내 외국계은행에서는 신용장거래는 물론이고, D/A 및 O/A거래에 있어서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유동화보험(EFF)을 통해 100% 보험 커버되는 상환청구불능조건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으며,(김창선, 2017, 43)신용장 위주의 개념을 넘어선 포페이팅약정이 아닌 매출채권 전반을 아우르는 매출채권매입약정(Accounts Receivable Purchase ; ARP)으로 확대 운용하고 있다.

이 역시 한국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카운터포페이팅과 같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유동화보험(EFF)는 공적수출신용기관과 위험인수능력에 다소 소극적인 외국환은행

81) 박세운 · 허해관·채동헌(2013), 전게서 50쪽 ; SMBC ARP Agreement 제3조.

간 상호보완적인 포페이팅 활성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Ⅳ. 위험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점

1. 문제점

1) URF800 준수문구 누락 및 표준계약서 적용 미흡

URF800은 2012년 11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에서 96%의 찬성으로 채택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 당시 한국외환은행이 국내 처음으로 포페이팅을 취급하기 시작하여 수출기업과 국내 외국환은행간에 포페이팅약정서를 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김창선, 2017, 29) 포페이팅관련 국제규칙이 제정된 준수문구를 포페이팅약정서[82]에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다.

URF800 제1조에도 포페이팅통일규칙은 포페이팅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이며,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포페이팅약정서에 '본 약정서는 포페이팅통일규칙(URF800)을 준수한다(This forfaiting agreement is subject to URF800)'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소구조건사유에 관련되는 조항에도 URF800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환청구불능조건의 매입에 대한 예외를 매도자인 수출기업과 매수자인 은행과 약정하여야 한다. 즉, 소구조건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이 위의 표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구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URF800 제4조(상환청구불능조건)의 내용에도 불구하고'를 추가 삽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외국환은행간 포페이팅 위험관리범위 상이

외국환은행이 포페이팅 취급 시의 인수위험은 국가위험과 신용위험을 주로 인수하고 있으나, 은행마다 약간씩 상이하며, 인수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소구의무대상으로 유보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은행마다 약간씩 상이하다.

따라서, 인수위험과 비인수위험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소구의무대상 유보사유도 심도

82) 국내 거의 모든 외국환은행들은 '외국환거래약정서'를 근거로 포페이팅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포페이팅거래)'의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있는 검토를 통하여 수출기업과 외국환은행 간 통일된 거래관행이 정착되어야 포페이팅 활성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실제 포페이팅을 취급함에 있어서도 신용장발행은행의 인수 후에만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어, 은행의 파산 위험만 인수하는 사실상 무위험의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포페이팅의 위험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인수위험과 비인수위험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비인수 위험에 대해서도 소구의무 대상 사유 즉, 유보사유로 열거하여 수출기업에게 대부분의 위험을 전가하는 형태의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환청구불능조건의 포페이팅이 아니라, 제한적 청구가능조건을 넘어 무위험의 상환청구가능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포페이팅 거래의 자산제거 위험 재검토

회계상 금융자산을 장부에서 삭제하는 것이 제거(derecognition)이다. 금융자산을 양도했다는 자체가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거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송인만 · 윤순석 · 최관, 2014, 508)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고 함)에서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자산을 제거하지만, 이전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여야 하고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통제여부에 따라 통제할 경우에는 자산을 계속 인식하여야 하고 통제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자산을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83]

포페이팅을 통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양도에서 중요한 문제는 양도거래가 제거조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이다. 상환청구불능조건의 포페이팅 거래는 포페이터인 은행이 수출채권을 현금화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수출채권 양도거래는 양도인인 수출기업이 수출채권을 현금화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채권의 위험과 보상을 양수인인 은행에 이전한 거래가 되면, 이로 말미암아 양도자인 수출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수출채권 금액이 제거된다.(김정애·최종서, 2014, 325)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은행에서는 인수이후의 채권만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구대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상환청구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인수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외국환은행의 위험이 거의 없는 무위험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출기업의 차입금 감소와 금융자산의 제거(book-off) 기능의 의미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구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위험요소들이 현재의 인수은행의 파산위험만

83) K-IFRS 1039호 AG36.

을 포페이터인 외국환은행이 인수하고, 여타 위험을 모두 수출기업이 떠안고 있는 포페이팅을 단순히 취급했다고 차입금을 감소시키고 장부제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즉, 소구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위험의 비중이 수출기업 모두가 자산을 제거할 만큼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인수이후의 채권만을 포페이팅 취급하여 인수은행의 파산위험이 거의 없는 위험 즉, 위험의 대부분을 수출기업이 소구대상 사유로 유보된 상태에서 현재의 외국환은행 포페이팅 취급은 수출기업의 자산제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2. 개선점

1) 외국환은행의 신용위험 관리기능 제고노력

최근 들어 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포페이팅 거래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요청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 신용장발행은행의 지급확약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신용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그만큼 감소되나, D/A거래나 O/A거래의 경우에는 은행은 소구대상인 해외소재 수입상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사후관리가 어렵고 소구권 행사 시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은행은 적극적인 채권회수를 위하여 수입상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대외위험을 인수할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SMBC, HSBC, BTMU 등의 국내 외국계 은행의 경우, D/A 및 O/A거래에 대해서도 상환청구불능조건의 수출금융을 취급하고 있다.(김창선, 2017. 41)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포페이팅은 화환신용장 외에도, 약속어음, 환어음, 보증신용장, 지급보증 등으로 그 지원대상이 유통가능성, 무조건적, 자유양도 가능한 보증장 또는 법적으로 유효한 aval일 경우에는 거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박세훈, 2007, 85), 국내에서는 기한부신용장 중심의 포페이팅이 취급되고 있다.(김창선, 2017, 34)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신용위험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포페이팅 취급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소구의무 대상범위 축소 및 통일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은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인수 이후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이후에 포페이팅약정서에 명기된 위반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구권을 갖는 약정을 하고

있는데, 은행마다 그 범위가 각기 다르다. 포페이팅의 원래 취지를 살려 최소한의 의무 즉, 발행은행과 당해 국가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은행이 위험부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신용평가 등 각 은행이 위험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가능한 한 그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여기에는 포페이팅 위험의 관리기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며, 국내 외국계은행과 같이 기한부신용장 외에 D/A 및 O/A까지 취급범위를 넓히고, 소구대상의무는 축소시켜 수출기업의 자산제거 충분조건에도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공적수출신용기관과의 인수위험 전가 필요성과 활성화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지금까지 수출기업으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함에 있어서 상환청구할 수 있는 소구조건의 매입을 위주로 안전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상환청구불능조건 매입에 따르는 해외 수입기업이나 신용장 발행은행의 신용위험을 관리할 자생력이 약하다.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능력이 제고되기까지 부족한 부분을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험인수 기능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포페이팅 업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국계은행은 은행 자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으나, 국내 외국환은행은 9개 은행만이 수출입은행과 카운터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을 뿐 여타 은행은 위험인수 부담으로 아예 취급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과 연계한 포페이팅은 국내 외국계은행을 중심으로 취급되고 있고, 국내 외국환은행은 아직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Ⅴ. 결 론

본고에서는 포페이팅 담보위험의 종류를 살펴보고, 국내 외국환은행이 부담하는 담보위험들을 각 은행별로 포페이팅약정서를 통해 비교 검토하면서 정리하였고, 약정서에 근거한 소구대상 사유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URF800 부록 표준계약서와, 포페이팅을 적극 취급하고 있는 국내 외국계은행과도 비교하였다.

URF800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어 만5년이 경과되었으나 국내 외국환은행이나 외국계은행의 포페이팅관련 약정서에는 URF800준용규정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은행

별로 담보위험의 종류와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고, 소구대상 사유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위험 인수 범위는 국가위험과, 수입기업 또는 은행의 신용위험은 대부분 동일하나 여타 위험은 은행간 차이가 발견되었고, 소구대상 사유에 있어서도 차이가 보이나 국내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계은행보다 더 많은 사유를 약정서에 열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내 외국환은행이 대부분의 위험을 수출기업에게 유보하여 위험관리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외국환은행의 담보위험과 유보사유인 소구대상 사유에 대해서는 수출기업과 외국환은행들의 위험관리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통일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포페이팅을 활성화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모든 외국환은행이 인수 이후의 확정채무 상태의 포페이팅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취급하는 현실을 보면, 인수은행 파산 등의 신용위험만을 담보하는 저위험 수출채권만을 취급하고 있다. 일부 국내 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카운터포페이팅 거래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과 특히 외국계은행에서는 D/A나 O/A거래에까지 확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과 연계하여 담보위험을 분산하는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다. 외국환은행들의 담보위험을 최소화하고 이를 수출기업들에게 전가함은 국제회계기준상 자산제거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으며, 단순히 포페이팅을 취급했다고 해서 차입금 처리가 아니라 장부제거(book-off)를 하는 일은 재고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능력의 제고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인수이후의 수출채권을 포페이팅 취급대상으로 하면서도 수출기업들에 대한 소구의무 대상범위가 무위험의 수준까지 다양하게 확대되어 있어 포페이팅 활성화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기에 외국환은행들의 위험관리 기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담보위험과 소구대상 사유의 차이점을 발견하여, URF800 준수문구를 약정서에 반영할 필요성은 물론 포페이팅약정서의 통일을 기하여 수출기업들과 외국환은행 간의 담보위험관리의 표준화가 시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점증하는 수출기업의 포페이팅 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창선(2014), “알기쉬운 국제결제론”, 서울: 도서출판 두남.

박세운 · 허해관 · 채동헌(2013), “포페이팅통일규칙 공식 번역 및 실무가이드, 서울:대한상공회의소 · ICC Korea·한국금융연수원.

송인만 · 윤순석 · 최관(2014), ”중급 재무회계“ 서울: 신영사.

이재민 · 배인성(2015), “글로벌 무역금융” 서울: 도서출판 두남.

한국외환은행 조사부(1979.10.), “Forfaiting 금융". 서울: 한국외환은행.

Ian Guild · Rhodri Haris(1985), "*Forfaiting*", Cambridge: Woodhead-Faulkner Ltd.

김정애 · 최종서(2014), “K-IFRS 도입 이후 매출채권 양도 회계처리에 관한 사례연구”, 회계저널, 제23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pp.317-343.

김창선(2017),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취급행태와 개선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2권 제3호, pp.25-47.

박세훈 · 정영동 · 김중년(2009), “포페이팅 거래시 채무증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1호, pp.271-293.

오원석 · 한기문(2011), “수출금융에 있어서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소고”,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9권, pp.89-109.

오원석 · 이운창 · 김필준(2013), “우리나라의 포페이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4호, pp.255-278.

유현진(2014), “국제포페이팅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04.

이운창(2013), “포페이팅 활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159.

A Comparative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for Forfaiting of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Chang-Sun Kim

Abstract

Forfaiting is a trade finance facility whereby financial institution purchases accounts receivable from exporters on a without recourse basis to resolve exporters' credit risk.

Since the effectuation of Uniform Rules for Forfaiting(URF 800), exporting companies have been interested in forfaiting and foreign exchange banks in South Korea have expanded products related to forfaiting. However, the risk management for dealing with forfaiting needs improvement.

In this paper, we will compare current forfaiting risk managements between foreign exchange banks and foreign banks in South Korea by studying the agreements for each bank and standard forfaiting agreements of the ICC.

There is a significant gap for risks covered and points of reserve(points of recourse) between each bank. This work suggests the need for unification for these gaps in order to enhance risk management for exporting companies and foreign exchange banks in South Korea.

〈Key Words〉 Forfaiting, without recourse, URF800, ICC, Forfaiting Agreement